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2017년 3월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기존 운영 중인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와 구미시 평생교육운영분야를 종합한 구미시 강동권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녀노소가 소통하는 어울림 문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공연, 체육, 교육, 기타시설(안 제2조)

다.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4조, 제5조)

라. 사용료, 사용료 등 감면 및 반환(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관람료(안 제12조)

바. 도서의 열람과 대출(안 제13조)

사. 입장의 제한(안 제16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불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시설 : 대 ·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 · 난방기 등)

나.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 교육시설 :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에어로빅, 댄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라. 기타시설 : 도서실,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 · 공연 ·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

는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용자"란 제1호 라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②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르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6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10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6조(사용료 등 납부) 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⑥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복지회관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 조례 시행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고지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복지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복지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

⑥ 복지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⑦ 제19조에 따른 회원과 3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3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복지회관 내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복지회관의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증도서의 관리) 복지회관의 도서실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회관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강사) ①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운영) ① 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복지회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회관 대관 사용료 기준표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별	기준시간	사용료 (원)	비 고
대공연장	1 일(09:00~22:00)	350,000	1. 행사용 대관시 •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오전(09:00~12:00)	100,000	
	오후(13:00~17:00)	130,000	
	야간(18:00~22:00)	160,000	
소공연장	1 일(09:00~22:00)	120,000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오전(09:00~12:00)	40,000	
	오후(13:00~17:00)	50,000	
	야간(18:00~22:00)	60,000	
전 시 실	m ² 당 (1일기준)	120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야외공연장	"	60	

2. 복지동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복지동	생활체육시설		평일(4시간이내)	60,000	•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가산 •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교육 시설	세미나실	평일(4시간이내)	20,000	
		강좌교실	평일(4시간이내)	30,000	
		다목적실	평일(4시간이내)	40,000	

3.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3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소형		20,000	
	외산스타웨인		50,000	
전자오르간		1회	4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시간당	40,000	4. 팔로우핀라이트, 프로젝트는 사용자 운영 5.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		20,000	
조명효과 장비	팔로우핀라이트	1회	10,000	
	파라이트64	개당	2,000	
	파라이트46	개당	5,000	
	소스포라이트	개당	3,000	
음향시설	음향기본 (외부장비등)	1회	50,000	1. 유·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2.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무선마이크(8ch)	1회/1ch당	10,000	
	인 터 컴	1회	10,000	
	유선마이크	1회	기본 3대	
			추가대당	
	DAT	1회	20,000	
	CD		10,000	
	행사녹화(file)		100,000	
	전시실 방송장비		50,000	
냉·난방	냉 방	시간당	연료시가의 10%가산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난 방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20,000	1.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2.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3.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음향반사판		30,000	
	고무 깔판		50,000	
	덧 마 루	33㎡당	20,000	
	의자, 보면대	10set당	10,000	
DLP 프로젝트	중 양	1회	10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드 라이 아 이 스 기		1회	10,000	
스 모 그 기		1회	10,000	
기 타	비디오촬영 (외부기자재)	1회	100,000	
	TV(인터넷)녹화.중계		200,000	
	연습실	1회(4시간)	40,000	

4. 체육, 교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	사용기준 및 이용구분	수강료(원)	비 고
교육시설 (기술, 전문교육,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등)	주 2시간 이하	월 5,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주 3시간 이상	월 10,000원	
체육시설 (헬스장)		월 10,000원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

○ 사용료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100분의 100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	100분의 100
감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	대·소공연장 (100분의 50)
	기타 비영리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로서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시실 (100분의 30)
○ 사용료 감면 요율은 공연시설, 체육시설(헬스장 제외), 교육시설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단,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동행자 1명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인 2종목 이상 신청한 경우	100분의 20
○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수강료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

1. 공연시설 대관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및 총사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사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한 때)	개시일 10일 이전	총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5일 이전	총사용금액의 50%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대관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3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5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3.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이용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4.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복지회관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

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상반기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가칭) 개관예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비 산정, 공연장 대관사용료 및 관람료, 시설임대료와 복지동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및 평생교육원의 사용료와 세입·세출 등을 기초로 함.
- 2017년은 상반기 개관을 가정하여 세입·세출 모두 10개월분만 반영한다.
- 운영비는 구미시예산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사용 및 이용료	138,774	169,693	172,917	176,203	179,549	837,136
	소계(a)	138,774	169,693	172,917	176,203	179,549	837,136
세출	○ 복지회관 운영비	2,167,553	2,639,088	2,689,233	2,740,328	2,792,394	13,028,596
	소계(b)	2,167,553	2,639,088	2,689,233	2,740,328	2,792,394	13,028,596
□ 총 비용(a-b)		-2,028,779	-2,469,395	-2,516,316	-2,564,125	-2,612,845	-12,191,4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167,553	2,639,088	2,689,233	2,740,328	2,792,394	13,028,596
민 간						
기 타						
합 계	2,167,553	2,639,088	2,689,233	2,740,328	2,792,394	13,028,596

5. 부대의견

- 세입(대관시설 사용료 등) 및 세출(복지회관 운영비)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예술회관 지정필
연락처	054-480-48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대관사용료 및 이용료 등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관 사용 료	공연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60,393	73,849	75,252	76,682	78,139
	전시실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10,792	13,196	13,447	13,702	13,963
	생활체육시설	4,800	5,869	5,981	6,095	6,210
	세미나실	1,600	1,956	1,994	2,032	2,070
	강좌교실	2,400	2,935	2,990	3,047	3,105
	다목적실	3,200	3,913	3,987	4,063	4,140
	소 계	83,185	101,718	103,651	105,621	107,627
시설 이용 료	공연장 관람료	27,989	34,225	34,875	35,538	36,213
	문화강좌료 등	27,000	33,016	33,643	34,282	34,933
	소 계	54,989	67,241	68,518	69,820	71,146
임대 료	카페테리아	342	418	426	434	442
	아트샵	258	316	322	328	334
	소 계	600	734	748	762	776
계		138,774	169,693	172,917	176,203	179,549

2. 세출

-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계		2,167,553	2,639,088	2,689,233	2,740,328	2,792,394	13,028,596
인 건 비	정 규 직 원	251,000	306,922	312,754	318,696	324,751	1,514,123
	강 사	183,211	224,030	228,287	232,624	237,044	1,105,196
	기 간 제 근 로 자	49,407	60,414	61,562	62,732	63,924	298,039
	소 계	483,618	591,366	602,603	614,052	625,719	2,917,358
경 비	인 적 보 험 료	46,427	56,771	57,850	58,949	60,069	280,066
	문 화 예 술 기 획	608,950	744,624	758,772	773,189	787,879	3,673,414
	시 설 물 관 리	574,605	702,627	715,977	729,580	743,442	3,466,231
	문 화 복 지 기 획	55,908	56,970	58,053	59,156	60,280	290,367
	기 본 경 비	398,045	486,730	495,978	505,402	515,005	2,401,160
	소 계	1,683,935	2,047,722	2,086,630	2,126,276	2,166,675	10,111,238

소관 실·과		문화예술회관
입 안 자	관 장	김 정 학
	담 당	정 영 화
	담 당 자	지 정 필 (480-4892)